|  |  |  |
| --- | --- | --- |
| **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적용 문제에 대한 해석**  법석[2015]9호  <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적용 문제에 대한 해석>이 2015년 4월 30일 최고인민법원 심판위원회 제1648차 회의에서 통과되어 공표하는 바이며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최고인민법원  2015년 4월 22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1차 회의의 결정에 의해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을 정확하게 적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민법원의 행정심판 실무경험과 결부시켜 관련 조항의 적용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해석한다.  **제1조** 사건이 기소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인민법원은 입안(立案)을 함으로써 법에 따라 당사자의 행정소송권 행사를 보장해야 한다.  당사자가 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행정소송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무조건 기소장을 접수해야 한다. 기소 조건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이 가능한 경우 접수현장 즉석에서 바로 입안(立案)등기해야 하며; 접수현장 즉석에서 기소 조건 부합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없는 경우에는 기소장을 접수한 7일내에 입안(立案)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7일내에 판단을 내릴 수 없을 경우 우선 입안(立案)해야 한다.  기소장의 내용 또는 서류가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인민법원은 보정이 필요한 내용, 보충서류 및 제출기한을 당사자에게 일회적으로 일괄고지해야 한다. 지정된 기한내에 보정을 거쳐 기소 조건을 충족시킨 경우 입안(立案)등기해야 한다. 당사자가 보정을 거절하거나 보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소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불입안(不立案)을 결정하고 그 이유를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불입안(不立案) 결정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2조** 행정소송법 제49조 제3항에 규정한 '구체적인 소송청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지칭한다.  (1) 행정행위 철회 또는 변경 청구;  (2) 행정기관의 법정(法定) 직책 또는 지급의무 이행 청구;  (3) 행정행위 위법 확인 청구;  (4) 행정행위 무효 확인 청구;  (5) 행정기관의 배상 또는 보상 청구;  (6) 행정협의 분쟁 해결 청구;  (7) 규장(規章) 이하의 규범성문건 일괄 심사 청구;  (8) 관련 민사분쟁 일괄 해결 청구;  (9) 기타 소송청구.  당사자가 소송청구를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한 경우 인민법원은 해명해야 한다.  **제3조** 이미 입안(立案)된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기소각하 판정을 내려야 한다.  (1) 행정소송법 제49조의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  (2) 법정(法定) 기소기한이 경과되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3) 피고를 잘못 지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경을 거절하는 경우;  (4) 법률 규정에 따라 법정대리인, 지정대리인, 대표인이 소송행위를 행하지 아니한 경우;  (5)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법률·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재심의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6) 중복적으로 기소한 경우;  (7) 기소 취하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소송을 제기한 경우;  (8) 행정행위가 그 합법적 권익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경우  (9) 소송물이 확정판결의 구속을 받고 있는 경우;  (10) 법정(法定) 기소 조건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기타의 경우.  인민법원은 사건서류 검토, 조사 및 당사자 면담을 거쳐 개정(開庭) 심리가 필요없다고 판단을 내린 경우 바로 기소각하의 판정을 내릴 수 있다.  **제4조**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행정소송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의 법정(法定) 직책 불이행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행정기관의 법정(法定) 직책 이행기한이 만료된 날로부터 6개월내에 제기해야 한다.  **제5조** 행정소송법 제3조 제3항에 규정한 '행정기관의 책임자'는 행정기관의 정직(正職) 및 부직(副職) 책임자를 포함한다. 행정기관의 책임자가 법정에 출두하여 응소하는 경우 1명 내지 2명의 소송대리인을 별도로 위임할 수 있다.  **제6조** 행정소송법 제26조 제2항에 규정한 '재심의기관이 기존 행정행위 유지키로 결정'은 재심의기관이 재심의 신청을 각하하였거나 재심의 청구사항을 기각한 경우를 포함하되, 접수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심의 신청이 각하된 경우는 제외된다.  행정소송법 제26조 제2항에 규정한 '재심의기관이 기존 행정행위 변경'이라 함은 재심의기관이 기존 행정행위의 처리결과를 변경한 경우를 지칭한다.  **제7조** 재심의기관이 기존 행정행위를 유지키로 결정한 경우 기존 행정행위를 행한 행정기관과 재심의기관을 공동피고로 지정해야 한다. 원고가 기존 행정행위를 행한 행정기관 또는 재심의기관 중의 하나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피고 추가를 원고에게 고지해야 한다. 원고가 피고 추가에 불동의하는 경우 인민법원의 권한으로 다른 하나의 행정기관을 공동피고로 추가해야 한다.  **제8조** 기존 행정행위를 행한 행정기관과 재심의기관이 공동피고로 지정된 경우 기존 행정행위를 행한 행정기관에 준하여 사건 관할법원의 등급을 확정한다.  **제9조** 재심의기관이 기존 행정행위를 유지키로 결정한 경우 인민법원은 기존 행정행위의 적법성을 심사함과 더불어 재심의 절차의 적법성에 대해서도 심사해야 한다.  기존 행정행위를 행한 행정기관과 재심의기관은 기존 행정행위의 적법성에 대한 거증책임을 공동으로 부담하며 둘 중 하나가 거증행위를 실시할 수 있다. 재심의기관은 재심의 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거증책임을 부담한다.  **제10조** 인민법원은 기존 행정행위에 대한 판결을 내림과 더불어 재심의 결정에 대해서도 해당 판결을 내려야 한다.  인민법원은 기존 행정행위 및 재심의 결정 철회의 판결을 내림에 있어 기존 행정행위를 행한 행정기관에게 행정행위의 재실시를 명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인민법원은 기존 행정행위를 행한 행정기관에게 법정(法定) 직책 또는 지급의무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내림과 동시에 재심의 결정 철회 판결도 같이 내려야 한다.  기존 행정행위는 적법하나 재심의 결정이 법정(法定) 절차를 위반한 경우 재심의 결정 위법성 확인 판결을 내림과 동시에 기존 행정행위에 대한 원고의 소송청구 각하 판결도 같이 내려야 한다.  철회되었거나 불법 또는 무효가 확인된 기존 행정행위로 인해 원고에게 손실이 초래된 경우 기존 행정행위를 행한 행정기관이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재심의 절차의 불법성으로 인해 원고에게 손실이 초래된 경우 재심의기관이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제11조** 행정기관이 공공이익 또는 행정관리목표의 실현을 목적으로 법정(法定) 직책 범위내에서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과 협상을 거쳐 체결한 행정법상의 권리·의무를 내용으로 한 협의서는 행정소송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한 행정협의서에 속한다.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다음 각 호의 행정협의와 관련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접수해야 한다.  (1) 정부특허경영협의;  (2) 토지·주택 등에 대한 수용보상협의;  (3) 기타 행정협의.  **제12조**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행정기관의 법 또는 약정에 위배되는 협의 불이행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민사법률규범상의 소송시효 관련 규정을 적용받는다. 행정기관의 일방적인 협의 해지·변경 등 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행정소송법 및 그 사법해석상의 기소기한 관련 규정을 적용받는다.  **제13조** 행정협의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사건은 행정소송법 및 그 사법해석의 규정에 따라 관할법원을 확정한다.  **제14조** 인민법원은 행정기관의 법과 약정에 따른 협의 이행여부, 일방적 변경·해지의 적법성을 심사함에 있어 행정법률규범을 적용함과 더불어 행정법 및 행정소송법의 강제성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민사법률규범을 적용할 수 있다.  **제15조** 원고가 피고의 법과 약정에 위배되는 협의 불이행 또는 일방적 변경·해지의 불법성을 주장하고 그 이유가 성립되는 경우 인민법원은 원고의 소송청구에 근거하여 협의 효력 확인, 피고의 협의 계속 이행 판결을 내림과 더불어 계속 이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명확히 할 수 있다. 피고가 계속 이행할 수 없거나 계속 이행이 실질적인 의미가 없을 경우 피고에게 해당 구제조치를 취하도록 명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으며; 원고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 피고에게 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내린다.  원고가 협의 해지 또는 협의 무효 확정을 청구하였고 그 이유가 성립되는 경우 협의 해지 또는 협의 무효 확정 판결을 내림과 더불어 계약법 등 관련 법률규정에 근거하여 처리할 수 있다.  피고가 공공이익의 수요 또는 기타 법정(法定) 사유로 협의를 일방적으로 변경·해지함으로써 원고에게 손실이 초래된 경우 피고에게 보상을 명하는 판결을 내린다.  **제16조** 행정기관의 법과 약정에 위배되는 협의 불이행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소송료는 민사사건 소송료 납부기준을 준용하며; 행정기관의 일방적인 협의 변경·해지 등 행위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소송료는 행정사건 소송료 납부기준을 적용하여 납부한다.  **제17조**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행정소송법 제61조에 규정한 관련 민사분쟁의 일괄 심리를 청구하는 경우 1심 개정(開庭) 전에 제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법정(法庭)조사 중에 제출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인민법원은 민사분쟁 일괄 심리 불허의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법에 따라 기타 경로를 통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을 당사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1) 행정기관이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법률규정이 있을 경우;  (2) 민사소송 전속관할 규정 또는 합의관할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3) 이미 중재를 신청하였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4) 일괄 심리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기타 민사분쟁.  불허 결정에 대하여 재심의를 한번 신청할 수 있다.  **제18조** 인민법원이 행정소송과 더불어 민사분쟁을 일괄 심리하는 경우 민사분쟁은 단독 입안(立案)한 후 동일 심판조직이 심리해야 한다.  행정기관의 민사분쟁 재결과 연관된 사건을 심리함과 더불어 민사분쟁도 일괄 심리하는 경우 단독 입안(立案)하지 아니한다.  **제19조** 별도의 법률규정이 없는 한 인민법원은 민사법률규범의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관련 민사분쟁을 일괄 심리한다.  조정중에 당사자가 행한 민사권익의 처분은 피소 행정행위의 적법성을 심사하는 근거로 삼아서는 아니된다.  행정분쟁과 민사분쟁은 별도로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 당사자가 행정재판 또는 민사재판만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한 경우 상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재판은 상소기가 만료되는 즉시 법률효력을 발생한다. 1심 인민법원은 모든 사건기록을 2심 인민법원에 이송해야 하며 행정심판부가 심리한다. 2심 인민법원은 상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확정판결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심판감독절차에 따라 재심해야 한다.  **제20조**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행정소송법 제53조에 규정한 규범성문건에 대한 일괄 심사를 인민법원에 청구하는 경우 1심 개정(開庭) 전에 제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법정(法庭)조사 중에 제출할 수 있다.  **제21조** 규범성문건이 합법적이지 아니한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행정행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근거로 삼을 수 없으며 재판사유에서 천명해야 한다. 확정판결을 내린 인민법원은 규범성문건 제정기관에 처리건의를 제출해야 하며 처리건읜는 제정기관의 동급 인민정부 또는 직상급 행정기관에 참조로 발송할 수 있다.  **제22조** 원고의 피고에 대한 법정(法定) 직책 이행 청구 사유가 성립되며 피고가 법을 어기고 이행을 거절하였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이 경과될 때까지 답변하지 아니한 경우 인민법원은 행정소송법 제7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피고에게 일정 기한내에 법에 따라 원고가 청구한 법정(法定) 직책을 이행하도록 명하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 피고의 조사 또는 재량이 필요한 경우 피고에게 원고의 청구사항을 재처리하도록 명하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  **제23조**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법에 따른 위로금, 최저생활보장 또는 사회보험대우 등 지급의무 이행 청구사유가 성립되며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法定) 지급의무의 이행을 거절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행정소송법 제73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피고에게 일정기한내에 해당 지급의무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제24조** 당사자가 직상급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하는 경우 판결, 판정 또는 조정서가 효력을 발생한 후 6개월내에 제출해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상황을 알게 되었거나 알아햐 하는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제출해야 한다.  (1) 기존 판결, 판정을 뒤엎을만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경우;  (2) 기존 판결, 판정에서 인정한 사실의 주요 증거가 조작된 증거인 경우;  (3) 기존 판결, 판정의 근거로 인용된 법률문서가 철회 또는 변경된 경우;  (4) 심판인력이 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횡령·뇌물수수, 사리도모, 법률왜곡 등 부정행위를 행한 경우.  **제25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당사자는 인민검찰원에 항소 또는 검찰건의를 신청할 수 있다.  (1) 인민법원이 재심 신청을 각하한 경우;  (2) 인민법원이 기한이 경과될 때까지 재심 신청에 대한 판정을 내리지 아니한 경우;  (3) 재심 판결, 판정에 분명한 오류가 있을 경우.  인민법원이 항소 또는 검찰건의에 기하여 재심 판결, 판정을 내린 후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입안(立案)하지 아니한다.  **제26조** 2015년 5월 1일 이전에 기소기한이 아직 만료되지 아니한 사건은 개정 후의 행정소송법상 기소기한 관련 규정을 적용받는다.  2015년 5월 1일 이전에 아직 종료되지 아니한 사건의 심리기한은 개정 전의 행정소송법상 심리기한 관련 규정을 적용받는다. 개정 전의 행정소송법에 따라 이미 완성된 절차적인 사항은 여전히 유효하다.  2015년 5월 1일 이전에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정 또는 행정배상조정서에 불복함에 따라 신청한 재심 또는 인민법원이 심판감독절차에 따라 가동한 재심은 개정 후의 행정소송법상 절차적 규정을 적용받는다.  **제27조** 이 해석이 시행되기 전에 최고인민법원이 공표한 사법해석과 이 해석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은 부분은 이 해석을 기준으로 한다. |  | **最高人民法院**  **关于适用《中华人民共和国行政诉讼法》若干问题的解释**  法释〔2015〕9号  《最高人民法院关于适用〈中华人民共和国行政诉讼法〉若干问题的解释》已于2015年4月20日由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648次会议通过，现予公布，自2015年5月1日起施行。    最高人民法院  2015年4月22日  为正确适用第十二届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第十一次会议决定修改的《中华人民共和国行政诉讼法》，结合人民法院行政审判工作实际，现就有关条款的适用问题解释如下：  **第一条** 人民法院对符合起诉条件的案件应当立案，依法保障当事人行使诉讼权利。  对当事人依法提起的诉讼，人民法院应当根据行政诉讼法第五十一条的规定，一律接收起诉状。能够判断符合起诉条件的，应当当场登记立案；当场不能判断是否符合起诉条件的，应当在接收起诉状后七日内决定是否立案；七日内仍不能作出判断的，应当先予立案。  起诉状内容或者材料欠缺的，人民法院应当一次性全面告知当事人需要补正的内容、补充的材料及期限。在指定期限内补正并符合起诉条件的，应当登记立案。当事人拒绝补正或者经补正仍不符合起诉条件的，裁定不予立案，并载明不予立案的理由。  当事人对不予立案裁定不服的，可以提起上诉。  **第二条** 行政诉讼法第四十九条第三项规定的“有具体的诉讼请求”是指：  （一）请求判决撤销或者变更行政行为；  （二）请求判决行政机关履行法定职责或者给付义务；  （三）请求判决确认行政行为违法；  （四）请求判决确认行政行为无效;  （五）请求判决行政机关予以赔偿或者补偿；  （六）请求解决行政协议争议；  （七）请求一并审查规章以下规范性文件；  （八）请求一并解决相关民事争议；  （九）其他诉讼请求。  当事人未能正确表达诉讼请求的，人民法院应当予以释明。  **第三条** 有下列情形之一，已经立案的，应当裁定驳回起诉：  （一）不符合行政诉讼法第四十九条规定的；  （二）超过法定起诉期限且无正当理由的；  （三）错列被告且拒绝变更的；  （四）未按照法律规定由法定代理人、指定代理人、代表人为诉讼行为的；  （五）未按照法律、法规规定先向行政机关申请复议的；  （六）重复起诉的；  （七）撤回起诉后无正当理由再行起诉的；  （八）行政行为对其合法权益明显不产生实际影响的；  （九）诉讼标的已为生效裁判所羁束的；  （十）不符合其他法定起诉条件的。  人民法院经过阅卷、调查和询问当事人，认为不需要开庭审理的，可以迳行裁定驳回起诉。  **第四条** 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依照行政诉讼法第四十七条第一款的规定，对行政机关不履行法定职责提起诉讼的，应当在行政机关履行法定职责期限届满之日起六个月内提出。  **第五条** 行政诉讼法第三条第三款规定的“行政机关负责人”，包括行政机关的正职和副职负责人。行政机关负责人出庭应诉的，可以另行委托一至二名诉讼代理人。  **第六条** 行政诉讼法第二十六条第二款规定的“复议机关决定维持原行政行为”，包括复议机关驳回复议申请或者复议请求的情形，但以复议申请不符合受理条件为由驳回的除外。  行政诉讼法第二十六条第二款规定的“复议机关改变原行政行为”，是指复议机关改变原行政行为的处理结果。  **第七条** 复议机关决定维持原行政行为的，作出原行政行为的行政机关和复议机关是共同被告。原告只起诉作出原行政行为的行政机关或者复议机关的，人民法院应当告知原告追加被告。原告不同意追加的，人民法院应当将另一机关列为共同被告。  **第八条** 作出原行政行为的行政机关和复议机关为共同被告的，以作出原行政行为的行政机关确定案件的级别管辖。  **第九条** 复议机关决定维持原行政行为的，人民法院应当在审查原行政行为合法性的同时，一并审查复议程序的合法性。  作出原行政行为的行政机关和复议机关对原行政行为合法性共同承担举证责任，可以由其中一个机关实施举证行为。复议机关对复议程序的合法性承担举证责任。  **第十条** 人民法院对原行政行为作出判决的同时，应当对复议决定一并作出相应判决。  人民法院判决撤销原行政行为和复议决定的，可以判决作出原行政行为的行政机关重新作出行政行为。  人民法院判决作出原行政行为的行政机关履行法定职责或者给付义务的，应当同时判决撤销复议决定。  原行政行为合法、复议决定违反法定程序的，应当判决确认复议决定违法，同时判决驳回原告针对原行政行为的诉讼请求。  原行政行为被撤销、确认违法或者无效，给原告造成损失的，应当由作出原行政行为的行政机关承担赔偿责任；因复议程序违法给原告造成损失的，由复议机关承担赔偿责任。  **第十一条** 行政机关为实现公共利益或者行政管理目标，在法定职责范围内，与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协商订立的具有行政法上权利义务内容的协议，属于行政诉讼法第十二条第一款第十一项规定的行政协议。  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就下列行政协议提起行政诉讼的，人民法院应当依法受理：  （一）政府特许经营协议；  （二）土地、房屋等征收征用补偿协议；  （三）其他行政协议。  **第十二条** 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对行政机关不依法履行、未按照约定履行协议提起诉讼的，参照民事法律规范关于诉讼时效的规定；对行政机关单方变更、解除协议等行为提起诉讼的，适用行政诉讼法及其司法解释关于起诉期限的规定。  **第十三条** 对行政协议提起诉讼的案件，适用行政诉讼法及其司法解释的规定确定管辖法院。  **第十四条** 人民法院审查行政机关是否依法履行、按照约定履行协议或者单方变更、解除协议是否合法，在适用行政法律规范的同时，可以适用不违反行政法和行政诉讼法强制性规定的民事法律规范。  **第十五条** 原告主张被告不依法履行、未按照约定履行协议或者单方变更、解除协议违法，理由成立的，人民法院可以根据原告的诉讼请求判决确认协议有效、判决被告继续履行协议，并明确继续履行的具体内容；被告无法继续履行或者继续履行已无实际意义的，判决被告采取相应的补救措施；给原告造成损失的，判决被告予以赔偿。  原告请求解除协议或者确认协议无效，理由成立的，判决解除协议或者确认协议无效，并根据合同法等相关法律规定作出处理。  被告因公共利益需要或者其他法定理由单方变更、解除协议，给原告造成损失的，判决被告予以补偿。  **第十六条** 对行政机关不依法履行、未按照约定履行协议提起诉讼的，诉讼费用准用民事案件交纳标准；对行政机关单方变更、解除协议等行为提起诉讼的，诉讼费用适用行政案件交纳标准。  **第十七条** 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请求一并审理行政诉讼法第六十一条规定的相关民事争议，应当在第一审开庭审理前提出；有正当理由的，也可以在法庭调查中提出。  有下列情形之一的，人民法院应当作出不予准许一并审理民事争议的决定，并告知当事人可以依法通过其他渠道主张权利：  （一）法律规定应当由行政机关先行处理的；  （二）违反民事诉讼法专属管辖规定或者协议管辖约定的；  （三）已经申请仲裁或者提起民事诉讼的；  （四）其他不宜一并审理的民事争议。  对不予准许的决定可以申请复议一次。  **第十八条** 人民法院在行政诉讼中一并审理相关民事争议的，民事争议应当单独立案，由同一审判组织审理。  审理行政机关对民事争议所作裁决的案件，一并审理民事争议的，不另行立案。  **第十九条** 人民法院一并审理相关民事争议，适用民事法律规范的相关规定，法律另有规定的除外。  当事人在调解中对民事权益的处分，不能作为审查被诉行政行为合法性的根据。  行政争议和民事争议应当分别裁判。当事人仅对行政裁判或者民事裁判提出上诉的，未上诉的裁判在上诉期满后即发生法律效力。第一审人民法院应当将全部案卷一并移送第二审人民法院，由行政审判庭审理。第二审人民法院发现未上诉的生效裁判确有错误的，应当按照审判监督程序再审。  **第二十条** 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请求人民法院一并审查行政诉讼法第五十三条规定的规范性文件，应当在第一审开庭审理前提出；有正当理由的，也可以在法庭调查中提出。  **第二十一条** 规范性文件不合法的，人民法院不作为认定行政行为合法的依据，并在裁判理由中予以阐明。作出生效裁判的人民法院应当向规范性文件的制定机关提出处理建议，并可以抄送制定机关的同级人民政府或者上一级行政机关。  **第二十二条** 原告请求被告履行法定职责的理由成立，被告违法拒绝履行或者无正当理由逾期不予答复的，人民法院可以根据行政诉讼法第七十二条的规定，判决被告在一定期限内依法履行原告请求的法定职责；尚需被告调查或者裁量的，应当判决被告针对原告的请求重新作出处理。  **第二十三条** 原告申请被告依法履行支付抚恤金、最低生活保障待遇或者社会保险待遇等给付义务的理由成立，被告依法负有给付义务而拒绝或者拖延履行义务且无正当理由的，人民法院可以根据行政诉讼法第七十三条的规定，判决被告在一定期限内履行相应的给付义务。  **第二十四条** 当事人向上一级人民法院申请再审，应当在判决、裁定或者调解书发生法律效力后六个月内提出。有下列情形之一的，自知道或者应当知道之日起六个月内提出：  （一）有新的证据，足以推翻原判决、裁定的；  （二）原判决、裁定认定事实的主要证据是伪造的；  （三）据以作出原判决、裁定的法律文书被撤销或者变更的；  （四）审判人员审理该案件时有贪污受贿、徇私舞弊、枉法裁判行为的。  **第二十五条** 有下列情形之一的，当事人可以向人民检察院申请抗诉或者检察建议：  （一）人民法院驳回再审申请的；  （二）人民法院逾期未对再审申请作出裁定的；  （三）再审判决、裁定有明显错误的。  人民法院基于抗诉或者检察建议作出再审判决、裁定后，当事人申请再审的，人民法院不予立案。  **第二十六条** 2015年5月1日前起诉期限尚未届满的，适用修改后的行政诉讼法关于起诉期限的规定。  2015年5月1日前尚未审结案件的审理期限，适用修改前的行政诉讼法关于审理期限的规定。依照修改前的行政诉讼法已经完成的程序事项，仍然有效。  对2015年5月1日前发生法律效力的判决、裁定或者行政赔偿调解书不服申请再审，或者人民法院依照审判监督程序再审的，程序性规定适用修改后的行政诉讼法的规定。  **第二十七条** 最高人民法院以前发布的司法解释与本解释不一致的，以本解释为准。 |